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단27033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장근석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4. 10. 25.

판결 선고2024.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1,814,316원과 그 중 33,921,919원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58234호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및 보증채무자인 망 D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14,316원 및 그 중 33,921,919원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31.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D은 2021. 7. 1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는 2021. 10. 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1. 12. 2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724호),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725호).

다. 원고는 2021. 11. 30. 주채무자인 F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1. 11. 3.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65668), 그 후 F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2. 4. 20.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28494,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2022. 6. 9. 위 관련사건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및 망인에 대하여 제1판결이 2012. 1. 31. 확정됨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각 10년으로 연장되었고(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1. 30. 주채무자인 F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한 다음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제2판결을 선고받았던바,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등 참조), 이러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민법 제440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도 주채무자에 대한 제2판결이 확정된 2022. 7. 21.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2항). 한편, 위와 같이 제1판결의 확정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이상 이는 상속인으로서 망인을 당연승계하는 피고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고, 원고가 위 2022. 7. 21.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8.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 131,814,316원과 그 중 33,921,919원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적극적 재산은 장례비에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고 개인적으로 처분행위 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자인하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1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관련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2. 7. 21. 공시송달에 의한 제2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은 무효이고, 주채무자와 사이에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은 보증인의 보증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2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이 무효이더라도, 주채무자인 F에 대한 부분이 적법·유효한 이상 민법 제440조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제1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관련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은희